

#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 
번호

367

제출연월일 : 2005년 11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첨단바이오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
-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성한 초지 일부가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감소된 초지에 상응하는 토지를 대체 취득하며
- 미동산수목원이 수목원으로써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속리산과 청남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목산야초 전시원 및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고
- 대형공장 및 고층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오창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
- 지방재정법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### □ 재산의 취득

#### 《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》

- 위치 :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83-2일원(오송생명과학단지내)
  - 단지규모 : 375,884㎡(113,704평)
  - 사업기간 : 2006. 1 ~ 12
  - 사업비 : 56,852백만원
    - 국비(75%) : 42,639백만원(281,913㎡)
    - 도비(25%) : 14,213백만원( 93,971㎡)
- ※ 375,884㎡중 25%인 93,971㎡를 지분으로 취득

《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》

- 위 치 :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-1번지의외 1필지
- 조성규모 : 7,736㎡(2,340평)
  -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-1 임야 7,240㎡
  -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-3 임야 496㎡
- 사업기간 : 2006. 1 ~ 12
- 사 업 비 : 702백만원(도비)
  - ※ 청주시 오동-구성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, 손실토지 대체취득

《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》

- 위 치 :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7번지 일원
- 신축규모 : 2식 1,805㎡(546평)
- 사업기간 : 2006. 4 ~ 2007. 12
- 사 업 비 : 2,270백만원(국비 1,135 도비 1,135)

《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》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-1(오창과학산업단지내)
- 신축규모 : 지상 2층 연면적 1,320㎡(399.3평)
- 사업기간 : 2006. 1 ~ 12
- 사 업 비 : 1,481백만원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비 고
계	18,667,056		
○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	14,213,114		
○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	702,042		
○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	2,270,000		
○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	1,481,900		

**4.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**

**5. 관계법령 : 별첨**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



# 관계 법령 발췌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기부채납,무상양수,환지,무상귀속,교환,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출자,기타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처분(매각,양여,교환,무상귀속,건물의 멸실,출자 기타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) 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)</p>

## 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</li> <li>2 ~ 5호 생략</li> </ol>